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1. 단기차입내역	차입금액(원)	100,000,000,000 ^{주1)}	
	자기자본(원)	161,718,738,073 ^{주2)}	
	자기자본대비(%)	61.84	
2.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원)	차입 전	차입 후	
기업어음(원)	-	-	
금융기관 차입(원)	-	100,000,000,000	
당좌차월한도(원)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	
기타차입(원)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100,000,000,000	
3. 차입목적	유동성 확보 및 자금 조달 다변화		
4. 차입형태	금융기관 차입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1.2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3명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한도거래자금 차입 약정금액으로 필요시 한도 내 차입 예정

주2)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기재상의 주의

주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한다.

※ 본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일 이전 1년간에 있었던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대한 누계금액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한다.

주2)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기준)을 말한다. 다만,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8.22.>

주3)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주4) "자기자본 대비"에는 단기차입금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주5) "차입형태"는 금융기관차입, 기업어음발행, 당좌개설, 당좌차월한도증액, 사모사채발행,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등 해당 차입형태를 기재한다.

주6) "차입전일 현재"는 당해차입 이전의 단기차입금총액을 기재하고, "차입당일 현재"는 당해차입을 포함한 단기차입금총액을 기재한다.

주7) 상기 기재사항 외의 단기차입과 관련한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 해당 여부를 기재한다.